

심사보고서

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심 사 보 고 서

| | |
|----------|-----|
| 의안 번호 | 546 |
|----------|-----|

2017.1.25.(수)
행정문화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일자 : 2017년 1월 6일

다. 회부일자 : 2017년 1월 10일

라. 상정일자 : 2017년 1월 17일

- 제35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: 상정·의결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 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행정국장 조병욱)

가. 제안사유

○ 여성재단 출범에 따른 여성조직 개편과 충북 혁신도시 조성사업 마무리에 따른 직제 축소 등 기구 조정사항을 자치법규에 반영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○ 여성조직 운영체계 개선 (안 제50조, 제51조, 제52조)

- (여성발전센터 폐지) 조문 삭제

○ 혁신도시관리본부 조직 축소 (안 제12조)

- (직제 조정) 4급 본부장 → 5급 팀제(혁신도시지원팀)

- (기구 조정) 균형건설국 균형발전과 내 혁신도시지원팀을 둬.

균형건설국 분장사무에 '혁신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' 추가

3. 검토보고 요지

- 금번 개정조례안은 여성재단 출범에 따른 여성조직 개편과 충북 혁신도시 조성사업 마무리에 따른 직제 축소 등 기구 조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
- 주요 내용은 여성재단 출범에 따라 여성발전센터를 폐지하고, 혁신도시관리본부를 4급 본부장 체제에서 5급 팀제로 축소하여 균형건설국 균형발전과 내에 혁신도시지원팀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합한 조직 개편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생략”

6. 심 사 결 과 : “원안가결”

7. 소 수 의 견 요 지

- 본 조례안에 따라 여성발전센터를 폐지하기 전에 “여성긴급전화 1366” 상담원들의 고용승계와 보수 등에 대해 상호협의를 통한 대책마련이 필요함.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「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| | |
|-----------|-----------|
| 의안번호 | 제546호 |
| 의결 연월일 | 2017년 월 일 |

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| | |
|-------|-------------|
| 제출자 | 충청북도지사 |
| 제출연월일 | 2017년 1월 6일 |

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침

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| | |
|----------|-----|
| 의안 번호 | 546 |
|----------|-----|

제출연월일 : 2017년 1월 6일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- 여성재단 출범에 따른 여성조직 개편과 충북 혁신도시 조성사업 마무리에 따른 직제 축소 등 기구 조정사항을 자치법규에 반영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여성조직 운영체계 개선 (안 제50조, 제51조, 제52조)
 - (여성발전센터 폐지) 조문 삭제
- 혁신도시관리본부 조직 축소 (안 제12조)
 - (직제 조정) 4급 본부장 → 5급 팀제(혁신도시지원팀)
 - (기구 조정) 균형건설국 균형발전과 내 혁신도시지원팀을 둬.
균형건설국 분장사무에 '혁신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' 추가

3. 의안전문 : 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5. 관계법령 발취 : 붙임

6. 비용추계서 : 해당없음

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 제12호부터 제23호까지를 각각 제13호부터 제24호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2. 혁신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

제4장 제6절(제50조부터 제52조까지)을 삭제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 제4장 제6절의 개정규정은 2017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.

제3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충청북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[별표]

분과위원회 설치 및 소관부서(제13조 관련)

| 명칭 | 소관부서 |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|
| | 주관실국 | 부서 |
| 일반행정 분과 | 기획관리실 (정책기획관) | 의회사무처, 공보관, 감사관, 기획관리실, 행정국, 충청도립대학, 자치연수원, 서울세종본부, 북부출장소, 남부출장소 |
| 복지여성 분과 | 보건복지국 (복지정책과) | 보건복지국, 여성정책관 |
| 문화체육 분과 | 문화체육관광국 (문화예술산업과) | 문화체육관광국, 청남대관리사업소 |
| 경제환경 분과 | 경제통상국 (경제정책과) | 경제통상국, 바이오환경국, 보건환경연구원, 경제자유구역청 |
| 농정 분과 | 농정국 (농업정책과) | 농정국, 농업기술원, 산림환경연구소, 축산위생연구소, 농산사업소, 내수면연구소 |
| 안전건설 분과 | 재난안전실 (안전정책과) | 재난안전실, 균형건설국, 소방본부, 각급 소방서, 도로관리사업소 |

* ()은 주무과

② 충청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제5호 본문 중 ‘혁신도시관리본부’를 삭제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|---|
| 제12조(균형건설국)균형건설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 1. ~ 11. (생 략) <u><신 설></u> 12. ~ 23. (생 략) | 제12조(균형건설국)----- -----. 1. ~ 11. (현행과 같음) <u>12. 혁신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</u> 13. ~ 24. (현행 12. ~ 23.과 같음) |
| 제6절 충청북도여성발전센터 제50조(설치) ① ~ ② (생 략) 제51조(소장) (생 략) 제52조(소관사무) 여성발전센터소장 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. 1. ~ 6. (생 략) | <u><삭 제></u> <u><삭 제></u> <u><삭 제></u> <u><삭 제></u> |

관계 법령 발췌

【지방자치법】

제112조 (행정기구와 공무원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

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

③ ~ ⑥ (생략)

【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】

제9조 (시·도의 기구설치기준) ① 시·도 본청에 두는 실·국·본부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, 실·국·본부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·국·본부의 개편, 명칭변경과 사무분장을 할 때 중앙행정조직과 지방행정조직간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.